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8월 24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8. 24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8. 23.(월)	담당부서	가스산업과
담당과장	김 진 과장(044-203-5230)	담 당 자	서성민 사무관(044-203-5232)

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
- 가스도매사업자(가스공사)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

□ **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관리**를 위해 **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**하는 내용의 **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어 **8월 31일 시행**될 예정이다.

□ 그간 가스도매사업자인 **가스공사는**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**액화천연가스(LNG)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**를 위해 **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*(Dead Stock)를 포함**하여 **천연가스를 비축**하였으나,

* 불용재고(Dead Stock): 액화천연가스(LNG)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(LNG) 재고수준으로서 실제 사용은 불가능(통상 저장탱크의 5% 수준)

○ 금번 개정으로 **가스공사**는 불용재고를 제외한 **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**으로 **비축의무량을 산정**하여 **비축**하여야 한다.

□ 산업부 관계자는 “금번 **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정**에 따른 **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 제고**로 이상한파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, 수입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 **천연가스 수급위기 상황**에 대한 **대응능력이 강화**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서성민 사무관(☎ 044-203-52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